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12)**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개인	화장품 도매 (513320)	비정기	100억미만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AAA는 '1X년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여 '00&00' 제품으로 유명세 Text 를 펼치며, '1X.0월 개인사업자 'BBB'을 개업하여, 방판업 매출 1 Text 위를 차지하고 있는 ㈜CCC의 화장품 브랜드 'BBB' 도매 판매 Text 업을 영위

Text - '2X.0월 ㈜CCC에서 탈퇴한 후, 본인이 설립한 법인 ㈜DDD를 통해 Text 자체브랜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 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매출누락	010101	화장품 무자료 매출누락
2	②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		특수관계법인과 공동경비 안분계산 누락
3	세액부당 감면	0115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부당감면
4	업무무관 비용	011205	업무무관 필요경비 사적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Text Ⅱ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매출 누락 (항목코드: 010101)
화장품 무자료 매출 누락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업체 BBB의 상품 매입·매출 내역, AAA의 '2X년, '2X년 소득 Text 대비 지출 및 재산증감 내역 분석한 바,

- 조사업체 대표의 소득대비 소비지출 및 재산증감이 과도하고, 상품

Text 매입 대비 매출액은 과소한데,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

Text 부터 고액을 입금받고 있어 상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관련 수입금액

Text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음

Text ○ 조사업체는 ㈜CCC로부터 '2X년, '2X년 상품 000백만원을 매입한 후

Text 그 중 000백만 원은 매출원가로 신고하고, 00백만 원은 광고선전비,

Text 소모품비 등 대부분 당기 비용에 포함하여 계상

Text ○ 조사업체의 결산서를 보면 '2X ~ '2X년 재고 등 자산 계상 없이 전액 Text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상품은 모두 사외 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AAA는 ㈜CCC로부터 강의수당 등을 받아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한

Text 대부분의 물품은 본부장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위 방문판매

Text 원들에게 마진없이 원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Text ○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당초

Text 분석되었던 FIU로부터 회신받은 STR거래 입금내역 000만원이 이중으로

Text 계상된 오류가 확인되어, 혐의금액 000백만 원으로 재산정하여 소명요청

Text 하여, 매출누락 확인 및 시인함

Text < AAA 계좌(1234) 입출금내역 요약 >

(백만 원)

Table	입금사유	합 계	20XX	20XX
	①입금액 합계	000	000	000
	②세금계산서 기발행	000	000	00
	③환불금 등	00	0	-
	④주택보증금	00	0	-
	⑤출금액	00	00	0
	매출 누락액(①-②-③-④-⑤)	000	000	000

Text ○ 매출 누락 확정금액 000백만원(공급가액) 중 매출처가 사업자로 확인된

Text 도매 매출 00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및

Text 해당 사업자에 자료 파생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Special

적출 2

❖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 (항목코드: 011203) 특수관계법인과 공동경비 안분계산 누락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업체와 특수관계법인 ㈜DDD는 동일장소인'서울 ○○ ○○대로'에

Text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당 사무실은 조사업체 대표 AAA가

Text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업체와 ㈜DDD 사이에 전대계약은

Text 체결되어 있지 않음

Text ○ ㈜DDD의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Text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료 등의 지출액이 전혀 발생

Text 하지 않으며, 인건비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Text - AAA가 동일장소에서 조사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DDD를 모두

Text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됨

Text <㈜DDD의 경비 계상내역 >

(백만원)

Table	구 분	합 계	20XX	20XX
	합 계	000	000	000
	매출원가	00	00	00
	지급수수료	00	00	0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업체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장 임차료 및 수도·
Text 전기료, 광고선전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 있음

Text < 조사업체의 공동경비 안분대상 경비 내역 >

(백만 원)

Table	구 분	합 계	20XX	20XX
	합 계	000	000	000
	여비교통비	00	00	00
	임차료	00	00	00
	접대비	00	00	00
	광고선전비	00	00	00
	지급수수료	00	0	0
	소모품비	0	0	0

Text ○ 특관법인 ㈜DDD가 부담할 공동경비 안분대상 경비는 조사업체의 경비

Text 중 ㈜DDD의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임차료, 여비교통비 등

Text 000백만원으로,

Text - ㈜DDD는 '2X년 이전 매출액이 없어 당기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

Text 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한 바, AAA은 공동경비 000백만원을 과다

Text 계상하여 필요경비 부인함

Text < 공동경비 분담비율(당기 매출액비율) 계산 >

(백만 원)

Table	구 분	20XX	20XX	
	조사업체	000	000	
	(주)DDD(1)	00	00	
	소 계②	000	000	
	㈜DDD의 매출액 비율(①÷②)	X.XX%	X.XX%	

Text <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 초과경비 계산 >

				(맥단원)
Table	구 분	합 계	20XX	20XX
	공동경비 안분대상 경비	000	000	00
	분담비율		X.XX%	X.XX%
	분담기준 초과경비	00	00	00

Table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Special

적출3

❖ 세액부당 감면 (항목코드: 0115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부당 감면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업체는 신고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Text 감면(소기업 도소매업, 10%)을 받았으나, 감면 대상 요건 중 소기업 매출액

Text 요건(서비스업 10억, 도소매 50억)에 해당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Text < 조사업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내역 >

(백만 원)

Table	구 분	합 계	2020	2021	비고
	감면세액	XXX	XX	XX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관련 자료 제출받아 감면세액 적정 여부 검토한바, 도매업과 서비스업 등

Text 검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Text 하며,

Text - AAA는 주된 업종이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매출액('2X년 XX억원,
'2X년 XX억원)이 10억원 이상으로, 수도권 내 중기업으로서 중소기업
Text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임

Table 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Table 법령 「중소기업법 시행령」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Table 법령 「중소기업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등 10억원 이하

Special

적출4

❖ 업무무관 비용 부인 (항목코드: 011205) 업무무관 사적사용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명품브랜드 구입에 지출되거나 피부과, 미용실, 무용학원 등 미용

Text 관리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000백만 원은

Text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조사업체의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

Text 사용 경비 혐의가 있음

Text < '2X년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내용 >

(백만 원)

Table	구 분	합 계	명품구입	미용관련	백화점 등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액	000	000	00	000

Text ○ 조사업체는 사적인 소송 수임료 등 업무무관 비용을 지급수수료

Text 계정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혐의금액이 아래와 같음

Text <지급수수료 계상 내역 >

(백만 원)

Table

е	날짜	거래처	적요	금 액	비고
	02-19		수임비	00	
	04-23	법률사무소EEE	민사수임비	00	
	04-23		형사수임비	0	
	07-23		수임비(민사)	0	
	08-02		수임료	0	
	08-12		수임료	0	
		합계금액	0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품의서, 분개장 등을 검토한 바, 접대비 등

Text 타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처리 하였으나 사실상 업무 관련성을 입증

Text 할 수 없는 금액 000백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접대비 재계산하여

Text 한도내 접대비 부인)

Text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세부내역>

(백만 원)

Table

е	구분		합계	202X년 귀속
	합 계		000	000
		접대비	00	00
	사적사용	판매촉진비	00	00
		지급수수료	0	0
		소모품비	00	00